

간이신속절차로서 즉결심판절차의 개선방안*

김 재 봉**

〈 목 차 〉

- I. 시작글
- II. 경미사건의 간이신속처리 필요성과 즉결심판절차 존폐론
- III. 즉결심판‘청구’와 관련된 문제와 개선방안
- IV. 즉결‘심판’과 관련된 문제와 개선방안
- V. 즉결심판과 관련된 기타 문제
- VI. 마침글

I. 시작글

즉결심판절차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함)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¹⁾ 범죄사건에 대한 심판의 청구를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한다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절차이며, 자백의 보강법칙 배제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통상공판절차에 대한 여러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를 통해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적정절차, 신속 및 실체적 진실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대한 사건에서는 경미한 사건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되지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정

* 본 논문은 2016. 10. 28. 한국형사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 제3조.

절차나 실체적 진실의 요구가 절차의 신속성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 즉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형사절차에서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결심판제도와 같은 간이신속처리절차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즉결심판절차가 졸속으로 운영되거나 그 대상자를 소홀히 취급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체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적정절차와 실체적 진실의 요구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즉결심판제도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도록 설계되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특히 최근 즉결심판청구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²⁾ 아래에서는 먼저 경미사건의 간이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기 한다. 이어서 즉결심판의 청구절차와 심판절차를 나누어 개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경미사건의 신속처리 필요성과 즉결심판절차 존폐론

1. 경미사건에서 간이신속절차의 필요성

수사·공소제기·재판·집행 등 일련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엄격한 소송법적 규율을 받는 절차를 통상처리절차라고 할 때, 간이신속처리절차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엄격한 소송법적 규율을 완화하여 간이한 방식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심내용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간이화하여 절차의 신속을 확보하는 것이며, 아울러 검찰과 경찰의 간소한 사건처리도 함께 그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간이신속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여러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소송경제에 치중하여 적정한 형벌권실현의 장애, 불복신청을 면하기 위한 법관 낮은 형량 책정, 무죄인 피고인이 무지나 불안 등으로 불복의 포기, 서면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이익사실을 진술할 수 없어 부당한 형

2) 경찰청은 전과자 양산방지 및 신속한 절차진행으로 인한 국민편의 도모를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경미범죄의 형사입건 자체와 함께 ‘즉결심판청구 활성화계획’을 실시하여 현장 경찰관이 PDA 입력만으로 단속하고 복잡한 서류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 ‘경범죄 통고처분 실효성 제고’정책이 실시되어 범칙금 미납자들이 소제불응이나 출석불응의 경우 정확한 소제수사를 통해 즉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즉결심판청구건수가 45,272건(2014년), 52,400건(2015년), 70,475건(2016년), 66,371(2017년)으로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경찰통계연보, 2017, 68면; 즉결심판 관련 경찰청 자료 참조).

의 신고가능성, 공개재판의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원칙의 침해 우려 등이다.³⁾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간이신속절차는 여러 장점을 갖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우선 재판의 신속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충실할 수 있다.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증거의 멸실·왜곡을 방지하여 실제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일반예방과 특별예방효과가 증대되며, 검사나 법원 등 사법기관이 형사절차에 투입하는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번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피의자·피고인에게도 이익이 되며, 형사절차로부터 신속히 해방될 수 있어 피해자의 이익도 도모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을 갖게 된다.⁴⁾ 이밖에 간이신속절차에서는 법정형이나 선고형에서 중형이 배제되어 피고인이 불안한 지위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고, 불출석에 의한 간이신속절차의 경우 범법사실의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⁵⁾

한편 간이신속절차는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⁶⁾ 즉 경미·단순사건의 간이신속 처리에 의하여 절약된 사법자원을 중대·복잡사건에 투입하여 이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심리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서 철저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대·복잡 사건에서는 사법자원의 집중적 투입을 통하여 실제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의 이념에 충실하고, 경미·단순 사건에 있어서는 실제적 진실이나 적정절차보다는 신속의 이념을 우선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⁷⁾ 근래 구약식사건이나 즉결심판사건에 비하여 구공판사건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다 많은 사법자원의 투입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간이신속절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약식절차와 함께 간이신속절차의 한 축을 이루는 즉결심판제도에서 간이신속절차의 장점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배중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6, 901면 참조.

4) 이재상·조근석,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864면 ; 박규홍,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54면.

5) 신동운,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25면.

6)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II), 2005, 194면.

7)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경미사건에 있어서는 실형 오판의 가능성이나 절차보장의 미흡이 있더라도 그 부작용은 중한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이익형량의 사고가 바탕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비례성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김재봉, "신속처리절차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4호, 2005, 259면).

2. 즉결심판제도의 존폐론

경미사건의 간이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론이 없지만, 경찰서장을 심판청구자로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존치론과 폐지론이 대립하고 있다.

(1) 폐지론과 존치론의 대립과 논거

즉결심판절차 폐지론은 경찰서장을 청구권자로 하는 현행 제도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대안으로는 검사를 청구권자로 하는 즉결심판절차로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⁸⁾ 즉결심판대상범죄의 상당 부분을 비범죄화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검사가 청구하는 약식절차로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 주장된다. 이러한 폐지론의 논거는 다양하다. 우선 현행 즉결심판제도는 프로이센의 경찰법즉결령 및 일제의 위경죄 즉결령과 일제 강점기하의 범죄즉결령에서 기원하는 것인데, 일본은 2차대전 후 위경죄즉결령이 폐지되고 독일도 1970년대 경찰의 즉결심판청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즉결심판제가 시행되는 것은 선진국의 입법례나 최근의 입법추세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⁹⁾ 또한 즉결심판제도로 인해 소추권자가 이원화되어 검찰의 소추기준과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추권행사 내지 범적용상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즉결심판청구권행사에 대한 통제장치의 미비와 그에 따른 남용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검사의 기소권행사에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등이 가능하지만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는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즉결심판청구 대상사건을 선고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경찰서장의 재량의 폭이 확대되어 자의적인 재량행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¹⁰⁾ 이러한 폐지론은 종래 정부 주도로 구성된 사법개혁기구에서 제시된 입장이기도 하며,¹¹⁾ 그 대표적인 예가 참여 정부 하의 사법개혁위원회(2003년 10월 구성)와 사법제도개혁추진

8) 한영수, "즉결심판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1998 봄호, 76면.

9) 신동운, 앞의 논문, 39면.

10) 황태정,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00면.

11) 1998년 1월에 발족한 검찰제도개혁위원회는 2001년 3월에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통고처분 또는 형사입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99년 5월에 대통령자문기구로 구성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는 2000년 5월 재량권 남용, 연혁적 문제 등을 이유로 즉결심판대상 범죄 중 상당 부분을 비범죄화하고 형사처벌은 검찰에 송치하여 처리할 것을 제시하였다.

위원회(2004년 12월 구성)이다.¹²⁾ 이들 기구의 입장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06년 1월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여기서는 형사절차를 '통상처리절차'와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로 이원화하고, 신속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종래의 약식절차는 '서면신속절차'로, 즉결심판절차는 검사를 소추권자로 하는 '즉시신속절차'로 승계·편입하고, 징역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 내의 실행선고가 가능한 '출석신속처리절차'를 신설하도록 하였다.¹³⁾

이에 반하여 즉결심판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견해도 주장되는데, 이에 따르면 현행대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에 한정하여 경찰서장의 소추권한을 인정하고 검사는 그 이상의 경미사건에 관여하는 제도를 취하는 것은 무방할 수 있다고 한다.¹⁴⁾ 그 논거로서 즉심제도가 폐지될 경우 간단한 즉심서류가 번잡한 일반서류로 대체되고, 검사에 대한 송치와 검사의 기소절차가 추가되어 업무부담 증가와 사건처리 지연의 우려가 있고, 즉결심판제도의 존속을 통하여 검찰이나 법원의 업무를 덜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형사절차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한다.¹⁵⁾ 또한 현행 즉심절차에서는 수사자료표가 작성되지 않아 범죄경력조회시 전과자로 파악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¹⁶⁾ 그리고 즉결심판제도는 기소독점주의 중대한 예외로서 공소권의 통일적 행사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검사의 고유권한은 아니며, 경미사건에 효율적인 처리로 국민의 편익이 증진된다면 경찰서장에게도 소추권한은 부여될 수 있으며,¹⁷⁾ 오히려

12) 사법개혁위원회는 즉결심판제도는 검사에 의한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로서 이는 선진국 입법례에 역행하고, 검찰과 경찰의 소추권의 이원화로 인하여 범죄응상의 불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출석불응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석을 강제할 수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범집행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할 것과 징역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한 범죄를 간이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속처리절차를 신설할 것을 건의하였다(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VII, 2005, 192면 이하.).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추진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경죄사건에 대한 출석신속절차, 서면신속절차, 즉시신속절차로 구성되는 신속처리절차의 도입을 의결하였다. 이는 형사소송개정안에 반영되어 2006년 1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구속자 석방제도의 통합 등 다른 개정사안들과 함께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입법화되지 못했다.

13)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장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참조.

14) 신동윤, 앞의 논문, 40면.

15) 박노섭, "신속처리절차의 도입과 수사절차", 경찰학연구 제9호, 2005, 78면 이하.

16) 사개추위 전문가 토론회 경찰출 처론문, 8-9면 : 수사연구사 편집부, '구속기간단축과 즉결심판제도', 수사연구 통권 제192호, 1999.10, 42면.

17) 강동욱, "즉결심판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경찰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4, 9면.

기소독점주의가 관료주의와 결합하면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를 막을 수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이 더 큰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¹⁸⁾ 또한 즉결심판청구권의 남용가능성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판사가 최종판단을 하기 때문에 남용이 어렵고, 검사의 기소유예나 판사의 양형에도 동일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¹⁹⁾

(2) 학설의 검토와 문제해결의 방향

앞에서 제시된 폐지론과 존치론에서 제시하는 논거는 타당한 것도 있지만 수긍하기 곤란한 것도 있다. 먼저 연혁적인 측면에서 현행 즉결심판제도가 일본이나 독일의 제국시대의 유물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경찰이 소추하더라도 법원에 의한 재판이 보장되는 한 즉결제도가 범죄즉결례 등 규문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식민지 잔재로서 볼 것이 아니다.²⁰⁾ 또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제기되는 비판도 타당하지 않다. 외국의 예를 볼 때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사인소추제도가 인정되고 있다.²¹⁾ 또한 미국의 경우 경미죄(petty offense)에 대하여는 피해자나 경찰이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에 예비기소장(complaint)을 제출하여 형벌이 부과될 수 있고,²²⁾ 프랑스의 경우도 2급 내지 4급의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 기소할 수 있다.²³⁾ 이밖에 기소독점주의는 헌법상의 원칙이거나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더 큰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법률에 의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폐지론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즉결심판청구원의 남용가능성은 상당한

18) 임석순,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5, 89면.

19) 강동욱, 앞의 논문, 12면.

20) 김형훈, "경미범죄와 즉결심판을 받을 권리", 경찰학연구 제8권 1호, 2006, 23면.

21) 독일의 경우 피해자에 의한 소추가 인정되고(독일형사소송법, 제374조), 또한 세무공무원의 경우 약식명령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기소권이 인정된다(Abgabeordnung §399).

22) 미국에서 중죄(felony)는 법정형이 1년을 초과하는 자유형 및 그 보다 중한 죄를 말하고, 경죄(misdemeanor)는 법정형이 5일 초과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00달러(단체는 10,000달러) 초과 100,000달러(단체는 20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인 범죄를 말한다. 경죄보다 더 경한 죄가 微罪(infraction)이며 법정형이 5일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0달러(단체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인 범죄이다. 경죄는 다시 A급 [6월 초과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500달러(단체는 10,000달러) 초과 100,000달러(단체는 200,000달러) 이하 벌금형], B급(30일 초과 6월 이하 자유형), C급(5일 초과 30일 이하 자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B급 경죄, C급 경죄, 미죄를 합쳐서 경미죄(petty offense)라 한다(18 U.S.C. §19, §3559, §3571). 미연방형사소송규칙은 '자유형이 부과되지 않는 경미죄'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FRCP §58(a)(3), (c)].

23) 김형훈, 앞의 논문, 14면.

실효성을 갖고 있다. 즉결심판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은 상황에서 통일된 기준이나 통제장치 없이 경찰서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릇되거나 자의적인 판단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소추의 이원화에 따른 통일성 결여뿐만 아니라 경찰 내에서도 법적용상의 형평성 내지 청구의 통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고 소추에 전문성을 갖는 검사를 청구권자로 하는 새로운 간이절차나 즉결심판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²⁴⁾ 이는 현재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를 각각의 전문가인 경찰과 검찰에 맡기자는 수사권조정논의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구권자의 교체만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그 전제로서 명확한 소추기준의 마련되어야 하고, 시·군 검찰청이나 부검사·검사직무대리 등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과 즉심사건의 전과기록 제외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혹자는 즉결심판청구를 검사가 담당하더라도 연간 5만건 내외에 불과하여 검찰권행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²⁵⁾ 그러나 현재도 검찰업무는 과도한 상태인데 여기에 즉결심판청구 업무까지 가세하면 경미한 사건은 물론 중한 사건의 처리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검사가 즉결심판청구를 담당할 경우 즉결심판청구와 연결되는 범칙금의 관리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통계상 즉결심판 청구건수 이상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결국 선결요건이 충족된다면 검사로 소추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행 즉결심판제도도 검찰 이전단계에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 전과기록의 제외 등 나름대로 충분한 장점을 갖고 있다. 즉 현행 제도가 당장 폐기되어야 할 만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추권자의 일원화에 필요한 전제요건의 충족이 단시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현행의 즉결심판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현실점에서 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즉결심판'청구'절차와 즉결'심판'절차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4) 김재봉, 앞의 논문, 263면.

25) 김재덕·송광섭, "현행 즉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제31권 제2호, 2015, 126면.

Ⅲ. 즉결심판 '청구'와 관련된 문제와 개선방안

1. 즉결심판 대상의 문제

(1) 즉결심판대상 결정 기준의 문제

즉결심판절차법은 즉결심판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에 따라 즉결심판청구의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 먼저 법정형 기준설은 처단형이나 선고형으로 해석하면 즉결심판청구에 있어서 경찰에게 부여된 재량의 폭이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 행정권에 의한 사법권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²⁶⁾ 처단형 기준설은 법률에 규정된 형벌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법률상 및 재판상 가중·감경을 한 후 그 범위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해당할 경우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즉결심판절차법이 명시한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심판의 주체인 법관이 처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입법자가 한정된 법정형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²⁷⁾ 선고형 기준설은 법관이 법정형과 처단형을 정한 후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형벌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선고한 형인 선고형이 즉결심판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현재 통설의 입장이다.²⁸⁾

위의 학설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법정형 기준설은 즉결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점은 있으나, 현행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가 규정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정도에 불과하여 즉결심판의 활용 여지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²⁹⁾ 따라서 법령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법정형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실현가능한데 그 선별과 기준설정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선고형 기준설은 즉결심판의 대상을 확대하여 경

26) 이재상·조근석, 앞의 책, 865면.

27) 김용우, "즉결심판제도에서의 신속성과 절차적 보장문제",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113면.

2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1739면 ;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909면. 황태정 교수는 해석론으로는 선고형설을 따르면서 입법론으로는 법정형설을 지지한다(황태정, 앞의 보고서, 64면 이하).

29) 심희기,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실패와 시민의 반응-범칙금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실무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2000, 87면.

미사건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즉결심판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범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즉결심판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따라서 경찰서장의 재량이 너무 넓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처단형 기준설은 문언에 충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중감경의 사유가 개입되어 명확성의 측면에서 단점을 갖는다. 이러한 학설들의 장점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정형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법률명과 죄명을 함께 고려하자는 입장,³⁰⁾ 명확성의 확보에 중점을 두어 종래 즉결심판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건과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을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³¹⁾ 죄명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 유무와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³²⁾ 등이 입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입장에 의하든 기준의 명확성과 활용가능성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양자를 최대한 살릴 수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사건으로는 경미사건의 간이신속한 처리라는 즉결심판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좁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선고형 기준설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즉결심판으로 처리해야 할 범죄는 쉽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³³⁾ 그 대상을 법률로 확정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선고형설을 지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선고형설에 의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이나 특별법 중 부진정경미범죄³⁴⁾도 포함되게 될 것이다. 부진정경미범죄의 즉결심판대상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형사입건에 의한 기소유예와 비교할 때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신속한 절차의 종결로 인한 형사사법기관과 심판대상자의 부담완화 등의 장점을 갖게 된다.³⁵⁾ 다만 이 경우 판단기준의 불명확성과 재량의 확대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30) 황태정, 앞의 보고서, 78면.

31) 심희기, 앞의 논문, 87면.

32) 송광섭,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12, 34면.

33) 앞의 즉결심판 현황 중 위반법규·죄명별 청구현황에서, 식품위생법위반, 옥외광고물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의 경우 연도별로 변동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34) 진정경미범죄는 행위 그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불법에 달하지 못한 범죄로서, 법정형의 상한선이 낮은 범죄로 입법에 의한 경미범죄를 말하고,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부진정 경미범죄는 형벌의 상한선이 비교적 높은 구성요건해당행위 중에서 사안의 경미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적용에서의 경미범죄를 말한다(임용,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45면).

35) 형법법 중에서 즉결심판의 대상에 적합한 경우로, 운전하던 1톤 트럭에서 떨어진 대과 한 단을 주어 자신의 차량에 넣고 가려던 P씨가 절도혐의로 입건된 사건(헤럴드 경제 2008. 9. 26.), 26세의 K씨(대학 4학년생)가 학자금을 벌려고 아파트 입구에서 봉어빵 장사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502원 상당의 전기를 끌어 쓰다가 주민 신고로 절도혐의로 입건된 사건(동아일보 2002. 1. 11) 등을 들 수 있다(김형훈, 앞의 논문, 28면; 이영돈, “즉결심판대상에 관한 연구”, 경찰학 연구 제10권 2호, 2010, 28면). 특별법법의 경우도

그 해결방안으로 즉결심판청구기준의 마련과 즉결심판청구에서 재량의 절차적 통제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2) 소년사건과 고소·고발사건의 포함 여부

즉결심판절차의 대상자로 연령에 따른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지만, 소년을 그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먼저 소년은 즉결심판이 아닌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소년에 대해 즉결심판에 의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소년보호이념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우선주의(소년법 제49조)에 반하는 것이며 소년법은 형사소송법이나 즉결심판절차법의 특별법이라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³⁶⁾ 반면 소년도 즉결심판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낙인효과와 방지와 신속한 사회복귀라는 측면에서 즉결심판이 보호처분보다 소년에게 유리하며, 즉결심판법이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³⁷⁾ 생각건대 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우선해야 하며 따라서 즉결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소년의 경우 무조건 신속하게 사회로 돌려보내 방지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선도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재를 부과하는 법원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데 즉결법원의 판사보다는 소년법원의 판사가 강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³⁸⁾ 또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소년법 제32조 제6항), 전과기록이나 낙인효과와 측면에서 즉결심판보다 크게 불리하지 않다. 소년이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입장에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소년에 대한 선도효과를 거두기 위해 수감명령 내지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다.³⁹⁾

즉결심판의 대상에 고소·고발사건을 포함시킬 것인지도 문제된다. 먼저 고소·고

향토예비군 훈련 불참 등의 경우에 신속하게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 다수 있을 것이다.

36)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114면. 경범죄위반사건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금지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통고처분보다 중한 즉결심판에 의한 형벌부과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로는, 이진국,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경미사건 처리의 특별절차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15, 14면.

37) 이영돈, 앞의 논문, 33면 이하.

38) 손동권, “즉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106면.

39) 이영돈, 앞의 논문, 34면.

발사건은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고소·고발사건을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경우 고소·고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즉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송치의무(제238조), 처리기간의 제한(제257조), 검사의 불기소나 공소취소시 고소·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제258조)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고소·고발인에게는 검찰항고권(검찰청법 제10조의29)과 재정신청권(형소법 제260조의30)이 인정되는데,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이러한 피고인 보호장치가 없다고 한다.⁴⁰⁾ 이에 대하여 고소·고발사건도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상의 고소·고발인 보호규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부터 고소·고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의자를 소추하는 절차인 즉결심판에 대한 주장이 될 수 없고, 고소·고발사건의 신속한 송치의무 규정도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것이지 전건 송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즉결심판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한다.⁴¹⁾ 생각건대 고소·고발사건이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 즉결심판절차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면 고소·고발인의 피해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이는 고소·고발인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법원실무에서도 고소·고발사건은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고소·고발 사건의 과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부담가중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즉결심판절차가 일정 부분 사건을 처리해 준다면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처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2. 즉결심판청구권의 남용과 형평성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은 즉결심판청구에 지나친 재량이 부여되어 그 남용의 소지가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가해진다. 이러한 비판에는 공감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40) 김희욱,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5면.

41) 김용우, 앞의 논문, 118면. 이밖에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기업의 고소·고발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즉결심판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는 이영돈, 앞의 논문, 36면.

(1) 즉결심판 청구대상의 명확화

전술한 바와 같이 즉결심판의 대상을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할 경우 즉결심판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게 된다. 즉 벌금, 구류, 과료가 규정된 형법범이나 특별법의 경우 즉결사건으로 처리할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종래 즉결심판절차의 주된 대상인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의 경우는 즉결사건과 통고처분사건의 구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경범죄를 10원 이하 벌금형 대상범죄(제1항), 2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범죄(제2항), 6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범죄(제3항)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여기서 제1항과 제2항의 범죄는 법정형이 20만원 이하이므로 즉결심판대상범죄임이 명백하나 제3항의 범죄는 법정형이 20만을 초과하여 즉결심판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범죄를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6조), 구체적인 사건이 즉결 또는 통고처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한편 경찰실무에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훈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즉결사건과 훈방사건의 구별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청구범위의 불명확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경찰에서 즉결심판청구를 기피할 경우 전술한 즉결심판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 따라서 즉결심판 청구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⁴²⁾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듯이 즉결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청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효력에 있어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되, 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즉결심판청구대상기준의 설정과 함께 통고처분이나 훈방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하여 각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

(2)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

앞에서 요구한 것처럼 즉결심판대상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기준이 지켜질 수 있는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찰에서 경미범죄심사

42) 즉결심판, 통고처분, 훈방, 형사입건의 세부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최준혁 외, 「즉결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령정보연구원, 2013, 77면 이하 참조.

위원회를 운용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입건사건과 즉결심판사건의 대상자를 심사하여 경찰에서 최초로 판단한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심사기구이다. 2015년 17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되었고 2016년에는 1급지 경찰서(142개서) 확대 운영되었으며 2017년에는 2급지 경찰서까지 확대되었다.⁴³⁾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즉결심판대상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종래 경찰재량 행사의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⁴⁴⁾ 그러나 심사대상사건이 극히 경미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고, 원처분은 여전히 경찰이 내부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로는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위원회 설치와 심사대상범죄를 넓히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원처분결과와 사후심사에 법률전문가 등 전문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즉결심판청구에서 사전동의 또는 사후이의제기의 문제

즉결심판절차법상 정식공판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즉결심판절차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거나 이의제기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공판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는 대상자가 미리 동의하거나 개시된 즉결심판에 대하여 사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⁴⁵⁾과 사전동의나 이의제도를 도입할

43)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절차는 경찰청 훈령인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먼저 (i) 심사대상 범죄는 절도·무전취식·단순폭행 등 경미형사사건과 즉결심판청구사건이다. 심사대상자는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최근 1년 이내 즉결심판청구사건 기록이 없는 자, 피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청구를 원하지 않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최근 5년 이내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만 7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자도 포함된다. (ii) 위원장은 경찰서장이며, 실무위원 3명(경찰서 생활안전과장·수사·형사과장 또는 청문감사관), 자문위원 3~5명(법률전문가·교육자·의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자)으로 구성된다. (iii)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사건이 없는 경우 익월에 개최 가능), 자문위원 2명 이상 참석시 개최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iv) 심사시 심사대상자가 심사위원회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심사대상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지구대·파출소장 포함), 피해자, 참고인 등을 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v) 심사사건 결정 유형으로는 경미형사사건은 즉결심판청구 결정 또는 원처분유지 결정을 할 수 있고, 즉결심판청구사건은 훈방 결정 또는 원처분유지 결정을 할 수 있다(경찰청, 2016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계획, 2016) : 김혁, “경찰의 경미범죄 처리실무에서의 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6, 191면 이하).

44) 시민참여에 의한 수사절차의 재량통제에 대하여는, 김재봉, “수사절차와 시민참여”, 경찰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2, 165면 이하 참조.

45) 손동권, 앞의 논문, 104면.

경우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절차가 지연되고, 약식명령에도 동의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⁴⁶⁾이 갈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간이절차에 대하여 동의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약식명령이나 교통즉결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61조의2, 교통즉결재판절차법 제4조 제2항), 즉결재판절차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서면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50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출석신속절차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요구하였으나(법안 제447조의8 제2항), 서면신속절차나 즉시심판절차에 대하여는 사전동의를 규정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동의나 이의제도가 갖는 장점 등을 고려하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증거법 적용 등에서 예외적 제도인 즉결심판제도의 위헌문제를 차단 내지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즉결심판청구에 처음부터 불만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 일단 즉결심판을 기다려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처음부터 즉결에 부동의하고 정식재판으로 가는 것보다 우회적이고 시간을 지체시킨다. 또한 즉결심판절차법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데(즉심법 제3조 제3항), 이러한 고지를 하면서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면 절차를 크게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 사전동의 없이도 일단 절차를 개시하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여 중단시키도록 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간이신속절차로서 즉결심판절차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IV. 즉결 ‘심판’ 과 관련된 문제와 개선방안

1. 증거법에 대한 예외 인정의 문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판절차에서의 증거법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자백의 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즉심법 제10조). 이러한 예외 인정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의 임의성은 요구되고,

46) 김희욱, 앞의 책, 39면.

정식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신속절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⁴⁷⁾ 간이신속절차라도 자백의 보강법칙과 전문법칙 모두 중요한 증거법칙이므로 인권침해방지와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해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⁴⁸⁾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자백의 보강법칙은 전면적으로 적용되거나 법정 자백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등이 주장된다.⁴⁹⁾ 생각건대 즉결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절차적 제도와 권리를 요구할 경우 간이신속절차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강요를 막는 장치로서, 그리고 전문법칙은 오판의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쉽게 예외를 인정해서는 곤란하다. 법정에서 자백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법정 자백에 한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입장도 수긍되는 면이 있다.⁵⁰⁾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상 보강법칙의 적용에 있어서 자백의 종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는 자백에도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강법칙에 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⁵¹⁾ 결국 자백의 보강법칙이나 전문법칙은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속하게 절차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 이들 증거법칙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까지 이들 원칙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즉결심판에 대한 동의제도를 도입하여 보강법칙이나 전문법칙의 미적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 즉결심판을 진행할 경우 이들 원칙의 적용 없이 심판이 행하여질 것이고 이는 간이신속절차로서 즉결심판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⁵²⁾

47) 최응렬,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2000, 251면.

48) 차경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2006, 64면.

49) 손동권, 앞의 논문, 118면.

50) 성원환,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 제8집 제3호, 2006, 146면. 이는 영미법상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는 기소후 공판절차에 들어가기 전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기소사실, 변호인의 조력권 및 배심재판권을 고지한 후 기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고 피고인 유죄담변을 하면 증거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양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Carmen, Criminal Procedure : Law and Practice, Wadsworth Publishing, 2013, 35).

51) 대판1966.7.26., 66도634.

52) 이재상·조근석, 앞의 책, 864면 참조.

2. 구류형 부과에의 문제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형이 부과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벌금이나 과료의 부과가 무의미하고 벌금이나 과료의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가 될 경우 더 중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구류형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⁵³⁾ 구류형 부과를 할 수 없는 약식절차와의 형평성, 기소유에 사안에 대한 자유형 부과와 부당성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와는 달리 불개정심판(즉심법 제7조 제3항)이나 불출석심판(제8조)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구류형에 대한 신중한 취급을 하고 있지만, 간이절차를 통하여 자유형의 일종인 구류형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구류형은 형법상 벌금형 보다 경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으나(형법 제50조, 제41조) 실제로는 그 고통의 정도가 큰 경우가 많은데, 이를 증거법칙이나 증거조사의 예외가 인정되는 간의 절차를 통하여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⁵⁴⁾ 구류는 단기자유형의 대표적인 예인데, 단기자유형에 대하여는 짧은 기간 강력한 충격을 통하여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이나 일반예방에서 감정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⁵⁵⁾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수형자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용은 오히려 범죄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밖에 구류는 별건구속(별건구류)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고,⁵⁶⁾ 즉결심판의 통계에서도 구류형 선고건수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그 활용도 미미하다.⁵⁷⁾ 1999년에 신설된 군사재판의 즉결심판절차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

53) 강동욱, 앞의 논문, 21면.

54) 김제덕, 송광섭, 앞의 논문, 124면.

55) 성원환, 앞의 논문, 145면. 그러나 성원환 교수는 구류형의 폐지에는 반대하면서도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56) 별건구류의 대표적인 예로 김시훈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즉결심판에 의한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작성한 살인사건의 자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대판1982.9.14., 82도1479전원합의제). 한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중한 범죄에 대한 별건 구속의 목적으로 구류 및 유치명령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 경찰 범죄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총 137명의 답변 중 13명(9.5%)가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것을 보면(김동혁·홍순광, “즉결심판제도의 운용실태에 관한 고찰, 경찰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5, 23면), 아직도 별건구류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7) 2000년 7,467건(0.66%), 2003년 3,172건(6.07%)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최근에는 2013 188건(0.34%), 2014년 145건(0.32%), 2016년 50건(0.07%)에 불과하다(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3년(60-61면),

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⁸⁾

따라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구류형을 폐지하거나 폐지 이전에는 구류형선고를 자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경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이 적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게 된다. 재산이 없는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더라도 결국 노역장유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구류형 폐지의 실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구류형과 노역장유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사회내처우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⁹⁾

구류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명령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즉결심판절차에서 판사가 구류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의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즉심법 제17조 제1항). 그러나 그 기간이 5일이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은 7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에게 5일을 초과하는 구류형의 선고후 정식재판의 청구 없이 5일을 넘기게 되면 일단 석방했다가 7일을 초과하면 다시 구금해야 하는데 이 때 도주의 우려와 절차의 번잡이 발생하게 된다. 구류형이 폐지되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구류형이 존속하는 하는 한 형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치명령기간은 형확정에 소요되는 7일까지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

3. 즉결심판절차와 출석의 문제(불출석심판과 출석확보)

즉결심판절차법은 피고인이 출석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즉심법 제7조 제1항, 제8조). 그러나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에 의하여 불개정심판을 할 수 있다(즉심법 제7조 제2항). 그리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출석이 요구되지 않고(즉심법 제8조의2 제1항), 피고인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불출석심판이 가능하다(즉심법 제8조의2 제2항). 이러한 불개정심판이나 불출석심판에 의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고 피고인도 공판정 출석으로 인한

2017년(68-69면).

58) 군사법원법 제501조의 14. 과거에는 군사재판이 즉결심판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정식 입건, 군수사기관에의 송치와 기소, 공판이라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비판(김동국, “군사법원법상 간이형사절차의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군사법연구 제9집, 1999. 9면)을 반영하여 1999.12.28. 즉결심판이 군사법원법에 신설되고 2000. 5. 1부터 시행되고 있다.

59) 손동권, 앞의 논문, 123면.

불편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즉결심판은 불출석심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으로는 불출석심판이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즉결심판 대상자의 대부분이 불출석심판을 원하는 상황에서 출석통지와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치느라 노력과 시간을 소비하느니 처음부터 불출석심판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을 원하는 피고인만 출석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구류형이 법정형으로 존속하는 한 불출석심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경우 서면과 증거에 의한 절차가 되어 약식절차와의 차별성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즉결심판절차의 출석과 관련하여 출석확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출석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요구되는데 현행법상 피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강제수단이 없어 즉심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서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등 법집행력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⁶⁰⁾ 그러나 구류형을 폐지하거나 벌칙금 미납에 대한 강제조치를 면허정지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4. 즉결심판의 확정력·기관력의 문제

즉결심판에 기관력이 부여되는 것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다. 즉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기관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중한 범죄사실까지도 처벌할 수 없고,⁶¹⁾ 경찰이 중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즉결심판에 대한 기관력을 통고처분 수준으로 제한하거나,⁶²⁾ 통고처분의 이행에도 기관력이 인정되어 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벌칙금 미납에 따른 즉결심판절차를 행정절차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거나 형사절차적 관점을 대폭 희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⁶³⁾ 그러나 이러한 기관력의 부작용은 일반 형

60) 손동권, 앞의 논문, 116면 ; 심회기, 앞의 논문, 92면.

6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에 대한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도 기관력이 미치고(대판1996.6.28. 95도1270),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손목을 잡고 육살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한 행위 대한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강간죄에도 기관력이 미친다(대판1984.10.10., 83도1790).

62) 박상기·이건호,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32면.

63) 심회기, 앞의 논문, 124면 이하.

사사건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로서 즉결심판제도가 존속하는 한 불가피한 결과일 수 있다.⁶⁴⁾ 또한 근래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순수한 자연적·사실적 요소뿐만 아니라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관례에 의해 어느 정도 기관력의 부작용이나 남용이 통제될 수 있다.⁶⁵⁾

5. 불이익변경금지의 문제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하여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판례는 즉결심판절차이나 약식절차 모두 약식에 의한 처벌절차라는 유사성을 근거로 약식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준용하여 즉결심판절차에도 불이익변경이 금지된다고 하였다.⁶⁶⁾ 그러나 2017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개정되어 불이익변경금지가 형중상향을 금지하고 부이익변경시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변경되었다. 즉결심판절차에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불이익변경금지를 인정했던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즉결심판절차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종래 약식절차에서 불이익변경을 금지한 형소법 제457조의2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대립하였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식재판청구는 상소가 아닌 동일심급의 재판이고, 불이익변경금지는 공판중심주의에 위반되며,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불이익변경금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청구권남용방지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⁶⁷⁾ 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는 상소에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도 부분적으로 정식재판청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를 인정하며, 불이익변경을 인정할 경우 불복을 제한하여 제1심의 부당한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률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율보다 높지 않으며, 정식재판청구권이 남용은 일부 영업범에 제한될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⁶⁸⁾ 즉결심판절차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논거에 의하여 찬반양론이 대립할 수 있다. 다만 즉결심판의 경우 정식재판청구율(정식재판청구 인원/즉결심판청구인원)은 0.1% 내외에

64) 강동욱, 앞의 논문, 23면.

65) 이정기, “경범죄처벌법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18, 101면.

66) 대판1999,1,15., 98도2550.

67) 최상욱,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0, 151면 이하.

68) 조기영,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5, 205면 이하.

불과하여⁶⁹⁾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이 약식절차처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즉결심판절차는 재판의 신속과 소송경제에 비중을 두는 간이신속절차라는 점에서 불이익변경금지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 기타 피고인보호와 관련된 문제

즉결심판절차가 경미사건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처리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결심판사건에서도 변호인이 도움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 능력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미사건을 전담하는 국선변호인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경찰청만하다.⁷⁰⁾ 한편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는 외에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심법 제11조 제5항). 간이신속절차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며, 다만 여기에는 형의 면제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형면제의 사유가 명백한데, 청구를 기각하고 정식재판절차에서 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⁷¹⁾

V. 즉결심판절차와 관련된 기타 문제

1. 경찰훈방의 문제

즉결심판절차는 경찰의 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종래 경찰훈방의 근거를 즉결심판절차에서 찾으려는 입장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⁷²⁾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논의에서 경찰훈방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훈방은 즉결심판제도의 존속이나 폐지와 관계 없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찰훈방권은 국가

69) 정식재판청구율(정식재판청구 인원/즉결심판청구인원)은 0.1%(20012년-2014년), 0.16%(2015년), 0.11%(2016년), 0.1%(2017년)에 머물고 있다(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7, 69면)

70) 손동권, 앞의 논문, 117면.

71) 실무에서도 형면제의 재판을 하고 있다(경찰통계연보 참조).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즉심판절차에서 형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458조의2).

72) 조국, “경찰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경찰법연구 창간호, 2003, 24면.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는 원리인 비례성원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즉결심판제도의 폐지와 무관하게 훈방권은 인정될 수 있다.⁷³⁾ 경찰 훈방은 낙인효과 방지, 사법기관의 업무경감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죄질이나 사안이 극히 경미하여 형사처벌의 가치가 매우 적은 사건에까지 일일이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노력 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찰훈방권은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⁷⁴⁾ 외국의 예에서도 경찰의 소추권한 유무와 관계 없이 경찰훈방권은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다. 미국경찰의 경우 광범위한 사건처리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⁷⁵⁾ 영국경찰은 사건중결권을 갖는 외에,⁷⁶⁾ 개선교육조치를 위한 권한도 입법(Criminal Justice Act 2003 : Crime and Disorder Act 1998)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미죄처분제도에 의하여 경찰이 많은 사건을 독자적으로 종결하고 있다.⁷⁷⁾ 독일도 소년사건 등에 있어서 경찰에게 실질적 다이버전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⁷⁸⁾

이처럼 경찰훈방권은 많은 장점을 갖는 제도로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그 권한 행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⁷⁹⁾ 훈방의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훈방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거나 일본의 미죄처분제도에서처럼 검찰에 사후보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비범죄화의 문제

종래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 사건들 중 형사처벌에 부적합한 사건들이 많았고, 이들을 제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범죄화론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형사처벌의 보충성이나 겸역성의 관점에서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⁰⁾ 여기서 비범죄화의 대상은 전술한 진정경미범죄와 부진정

73) 문성도, "과출소장 훈방권의 법적 근거", 경찰대 논문집 제15집, 1995, 716면 참조.

74) 차경환, 앞의 보고서, 55-56면.

75) Territo, L./Halsted, J. B./Bromley, M. L., Crime and Justice in America, Prentice Hall, 2004, 553.

76) Padfield, N., Text and Materials o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Oxford Publishing Press, 2005, 42.

77) 藤永幸治/河上和雄/中山善房 編, 大コメンタル刑事訴訟法, 青林書院, 1996, 807면.

78) Jasch, M., Perspektiven der polizeilichen Entscheidungsmacht, Books On Demand, 2003, 99.

79) 황태정, 「간이형사재판제도의 효율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82면.

경미범죄가 될 것이고, 비범죄화의 방법으로 전자는 입법상 비범죄화의 대상이 될 것이고, 후자는 훈방, 지도장, 과태료나 범칙금 등의 행정상 제재,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에 의한 적용상 비범죄화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는 사소하더라도 그것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가볍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비범죄화에는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⁸¹⁾ 또한 행정제재로 변경할 경우 제재수단을 과태료로 할 것인지, 범칙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그 집행력 약화에 따른 기초질서 확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⁸²⁾ 그리고 범칙금 제재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행 즉결심판제도가 범칙금의 징수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⁸³⁾

VI. 마침글

경미한 형사사건을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 이유로서 개혁의지가 미흡했고, 형사사법개혁 논의가 국민의 권익보장보다는 법원과 검찰의 조직발전이나 위상제고의 차원으로 파악되어 추진력이 미약했으며, 자신의 업무영역에 대한 범조엘리트 집단의 이기주의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⁸⁴⁾

본 논문의 주제인 즉결심판절차의 개선에 대하여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문제제기와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 이미 실현되거나 제도화된 것도 있으나 아직도 반복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들도 있다. 즉결심판절차를 비롯한 경미사건의 처리절

80) 실질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

81) 손동권, 앞의 논문, 119면 이하.

82)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제재수단의 집행률(건수 대비)은 벌금의 경우 98.1%, 범칙금의 경우 80.4%, 과태료의 경우 52.5%를 나타냈다(최무현, "현행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대한 소고",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기준과 대상 공청회 자료집, 2008, 97면). 이 통계에 따르면 형사제재에 근접할수록 집행률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83) 범칙금미납자에 대한 강제조치로 형사제재가 아닌 다액의 가산금과 면허정지처분과 같은 순수한 행정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로, 한영수, 앞의 논문, 70면.

84) 김종구, 「형사사법개혁론」, 법문사, 2004, 466-467면.

차는 단지 그 자체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중한 사건의 처리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미하고 단순한 사건이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때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고 중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즉결심판절차의 개선도 전체 형사절차의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여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편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혁의 규모가 클수록 그에 대한 반발도 커서 실현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개혁의 어려움이 현행 제도에 안주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규모의 개선이라도 즉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결심판제도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개혁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작은 것부터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도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부터 반복된 식상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제어 : 즉결심판절차, 정식재판청구, 경범죄, 비범죄화, 신속절차

*논문접수:2018.12.7. *심사개시:2018.12.8. *논문수정:2018.12.26. *게재확정:2018.12.28.

參 考 文 獻

I. 단행본

- 김종구, 「형사사법개혁론」, 법문사, 2004
- 김희옥,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박상기·이건호,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6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II), 2005
- 송광섭,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12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 이재상·조근석,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 차경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2006
- 최준혁 외, 「즉결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령정보연구원, 2013
- 황태정, 「간이형사재판제도의 효율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황태정,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Carmen, Rolando V. del, Criminal Procedure : Law and Practice, Wadsworth Publishing, 2013
- Jasch, M., Perspektiven der polizeilichen Entscheidungsmacht, Books On Demand, 2003
- Padfield, Nicola, Text and Materials o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Oxford Publishing Press, 2005
- Territo, L./Halsted, J. B./Bromley, M. L., Crime and Justice in America, Prentice Hall, 2004

藤永幸治/河上和雄/中山善房 編, 大コメンタル刑事訴訟法, 青林書院, 1996

II. 논문

- 강동욱, “즉결심판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경찰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4
- 곽규홍,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 김동국, “군사법원법상 간이형사절차의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군사법연구 제9집, 1999
- 김동혁·홍순광, “즉결심판제도의 운용실태에 관한 고찰, 경찰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5
- 김용우, “즉결심판제도에서의 신속성과 절차적 보장문제”,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 김재덕·송광섭, “현행 즉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제31권 제2호, 2015
- 김재봉, “수사절차와 시민참여”, 경찰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2
- _____, “신속처리절차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4호, 2005
- 김혁, “경찰의 경미범죄 처리실무에서의 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6
- 김형훈, “경미범죄와 즉결심판을 받을 권리”, 경찰학연구 제8권 1호, 2006
- 문성도, “과출소장 훈방권의 법적 근거”, 경찰대 논문집 제15집, 1995
- 박노섭, “신속처리절차의 도입과 수사절차”, 경찰학연구 제9호, 2005
- 성운환,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 제8집 제3호, 2006
- 손동권, “즉결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 수사연구사 편집부, ‘구속기간단축과 즉결심판제도’, 수사연구 통권 제192호, 1999
- 신동운,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 이정기, “경범죄처벌법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18
- 임석순,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5
- 이영돈, “즉결심판대상에 관한 연구”, 경찰학 연구 제10권 2호, 2010
- 조국, “경찰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경찰법연구 창간호, 2003

- 조기영,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5
-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최상욱,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0
- 최응렬,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2000
- 한영수, “즉결심판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1998 봄호, 1998

[ABSTRACT]

Reforms of the Proceedings for Summary Judgments

Kim, Jae-Bong*

It concurs generally in opinion that a summary criminal procedure is needed to guarantee a speedy trial for minor offenses. However the current summary judgements proceedings as a typical example of summary criminal procedure contain many problems, so proper reforms should be taken. First of all,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summary proceedings should be in maintenance or abolition, the claimer of which is the chief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 summary judgement procedure, in which the prosecutor is in charge of claiming, in order to specialize and purify the roles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respectively, as experts i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But as a precondition, it is essential to secu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such as the county prosecutor's office and the deputy prosecutors. In order to resolve the criticism that the scope of the claiming objects is ambiguous and that it is likely to be abus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laiming guideline such as a sentencing guideline.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cedural control mechanism through a committee with outside experts such as lawyers in order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claim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controversy of unconstitutionality by introducing a prior consent for proceedings. Since the principle of reinforcement of confession and the hearsay rule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wrong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it is not easily to exclude its application and it is appropriate to obtain prior consent in order to exclude them. Although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the validity of the imposition of the detention, it is reasonable to abolish it, because there are very few cases of its imposing and there are possibilities of abuse.

Key words: Proceedings for Summary Judgments, Application for Regular Trial, Minor Offenses, Decriminalization, Speedy Proceedings, Fast Track Procedure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